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11. 12.

나.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다. 회부일자 : 2005. 11. 21.

라. 의안번호 : 제2005 ~ 67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o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 7월 1일 개정되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및 당연직 위원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o 제명 "거창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
- o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 장으로 변경하고, 산림환경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타소 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추가 지정함.(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o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의 변경과 재난관리와 연관이 있는 실과소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재난과 관련이 많은 4명의 실과소장을 추가한 것은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라 판단되나, 재난발생시 이재민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및 보건소장을 추가 하는 방안이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0 동 개정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제2조의 구성에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직제순에 따라 추가함

7.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

재난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군청 실과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림환경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4명의 실과소장을 추가하였으나, 인력관리, 이재민 및 부상자 처리와 관련이 있는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누락되어 직제 순서에 따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생략"
- 9. 기타 필요한 사항: "생략"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제2조(구성) ①	제2조(구성)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자가 된다. 1 7(생략)	1 7(생략)	1 6(생략)
8. 건설과장9. 지역개발과장10.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	8. 산림환경과장9. 건설과장10. 도시건축과장11. 재난안전관리과장	 7. 행정과장 8. 경제과장 9. 사회복지과장 10. 산림환경과장
11. KT진주지사 거창지점장 12.한국전기안공사 거창지점장	12. 농업기술센터소장 13. 상하수도사업소장 14.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	11. 건설과장 12. 도시건축과장 13. 재난안전관리과장
	15. KT진주지사 거창지점장 16.한국전기안전공사 거창지사장	14. 농업기술센터소장15. 보건소장16. 상하수도사업소장
		17.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장 18. KT진주지사 거창지점장 19. 한국전 안전공사 거창자사장